

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

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I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

-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.
 - *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*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(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-붙임1-참고)
 - *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- *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,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

II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의 권리와 의무

-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한다.
 - *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 - *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,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
□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.

신체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 개인위생 활동(세수, 양치, 머리 감기, 목욕 등) * 몸단장(머리 손질, 손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 등) * 체위 변경, 이동 도움, 배설 도움(화장실.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 *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
인지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회상 훈련, 기억력 향상 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.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(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요리하기 등)
일상생활 지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외출 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 구매, 병원 이용 등) *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, 빨래, 식사 준비, 설거지 등 ※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
정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
□ 수급자(보호자)가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

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(이하 “급여외행위”라 한다)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
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3.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
※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과 수급자(보호자)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, 장기요양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, 인권 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022년 12월 31일

수급자 성명: _____ (서명 또는 인)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 성명: _____ (서명)

보호자 성명: _____ (서명 또는 인) 장기요양기관: _____ 제 주 노 인 복 지 센 터 장(인)

